

#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2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화된 교육정책 방향성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: 「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미래교육 정의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목적 등 용어 변경 사항 반영 (안 제1조~제4조, 제8조~제9조)
-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8조)
- 「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(안 제9조)

##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6. 7. ~ 6. 27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[붙임 1]

##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혁신교육”이란 경기도 교육청”을 ““미래교육”이란 경기도교육청”으로 하고, “창의적 인재를 육성”을 “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혁신교육지구”란 안산시와 경기도 교육청”을 ““미래교육협력지구”란 시와 교육청”으로, “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”을 “미래교육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”을 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”으로, “혁신교육”을 “미래교육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혁신”을 “미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육성”을 “양성”으로, “혁신”을 “미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혁신교육지구”를 “미래교육협력지구”로, “혁신교육협력”을 “미래교육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”을 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교육전문직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“혁신교육” 을 “미래교육협력” 으로 하고,  
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이 세 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미래교육협력팀장 김 지 숙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지 혜 (행정 1628)

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 이라 한다)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,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진다.

② 시장은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)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·원장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(이하 “교육지원청” 이라 한다)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5명 이내로 위촉 하되, 외부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 이 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-----

-----미래교육협력-----

② ----- 미래-----

제4조(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) ① --

-----양성-----

----- 미래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

----- 미래교육협력지구-----

----- 미래교육협력-----

② -----

-----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공무원

및 관내 학교 교직원

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9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

2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항은 『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9조에 따른 안산교육 주민참여 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 기능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미래교육협력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미래교육협력-----  
-----

<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